

「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(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)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8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변 상 용

나. 제안이유

- 선주원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리단길 및 마을 안길 일방통행 구간 주정차 금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, 인근 노후 주택·빈집 등을 매입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 해소와 주차 환경을 개선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

- 위 치 : 구미시 금오산로 22안길 일원
- 대 상 : 토지 1,131.6㎡, 건물 연면적 525.273㎡
- 사업기간 : 2024년 ~ 2025년
- 총사업비 : 1,900백만원(시비)
 - ※ 사업비 산출내역 : 매입비(건축물, 대지) 1,500백만원
공사비(철거,포장) 400백만원
- 기준가격 : 1,208.6백만원(토지 652.8, 건물 555.8)
 - ※ 2024년 개별공시지가
- 주요시설 : 주차장(50면)
- 추진현황
 - 선주원남동 그린뉴딜(전선지중화) 공모 선정 : '23. 11월
 - 금리단길 일방통행 의견수렴 및 공청회 : '24. 5월
 - 교통안전시설 심의(구미경찰서_조건부가결*) : '24. 6월
 - * 조건부가결 : 일방통행 구간 주정차금지, 보차분리,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
- 향후추진계획
 -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(안) : '24. 10월
 - 2025년 본예산 확보 : '24. 11월
 - 토지 소유자 매입 협의 및 감정평가 : '25. 1월
 - 협의 취득(등기 이전) 및 간접보상(이사) : '25. 5월
 - 철거 및 포장 : '25. 6월~

라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17	1,656.873	1,208.6	
	1.매입	토지	9	1,131.6	652.8
		건물	8	525.273	555.8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
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

취득재산 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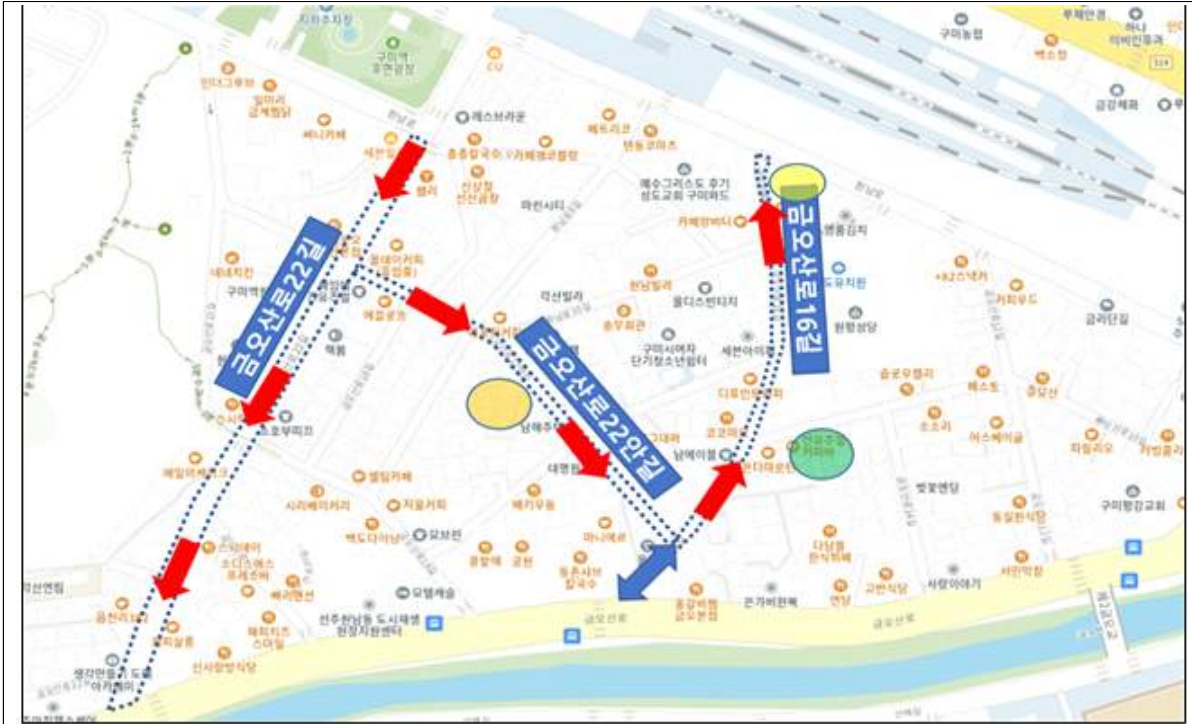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소유자	비고
	구분	소 재 지	수량					
총계		17건	1,656.873	1,208.6				
소계		9건	1,131.6	652.8				
취득	토지	원평동 412-5	154	90	2025년	금리단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	박영구	매입
		원평동 413-9	3	1.8			박영구	
		원평동 414-1	107.3	55			권상태	
		원평동 414-21	94.2	48			권상태	
		원평동 414-12	136.5	78			이청숙	
		원평동 428-7	143.4	91			이명기	
		원평동 428-1	161.7	103			백정기	
		원평동 428-6	162	91			임나경	
		원평동 428-4	169.5	95			백효동	
소계		8건	525.273	555.8				
취득	건물	원평동 412-5	72.923	82	2025년	금리단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	박영구	매입
		원평동 414-1	99.83	50.9			권상태	
		원평동 414-21	65	42.3			권상태	
		원평동 414-12	56.4	65.8			이청숙	
		원평동 428-7	66	76.6			이명기	
		원평동 428-1	66	87			백정기	
		원평동 428-6	41.93	73.7			임나경	
		원평동 428-4	57.19	77.5			백효동	

위 치 도

□ 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

○ 소재지 : 원평동 412-5번지 일원

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동의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‘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’은 선주원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리단길 및 마을 안길 일방통행 구간 주정차 금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, 사업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.
- 집행기관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매입 협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, 토지 취득 후 철거 및 포장 추진 시 안전시설 설치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주차환경이 열악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